

의안번호	2218664
의 퇴 인	박해철의원
회 답 일	2026.5.13.
추계번호	26B2454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)	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(제2항) 1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·시행 2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·운영 3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	의무규정
2	안 제23조의3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)	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3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)	—	·미대상 -기상청에 따르면, 「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」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재 및 평가 문제은행 개발,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 중이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8억원임 (참고자료 참조) -또한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에 ‘국가자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운영 기본계획’을 수립하였음
2	안 제23조의3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상청에 따르면,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, 기후변화 교육기관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2026년 11월 지정할 계획임
 - 양성기관 지정 사전홍보(상반기), 공고 및 신청접수(8월), 심사(9~10월), 지정(11월)

[표 1]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

-
- | |
|---|
| ① 국공립 교육시설 |
|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기후·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그 설립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|
|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·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|
| ④ 「민법」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·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|
-

자료: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)

- 「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 고시」에 따르면 양성기관은 상시근무인력·전임강사 및 교육장비 등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가가 양성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장비 확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양성기관의 필요 인력·장비 규모 및 국가의 지원 범위·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양성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, 지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해당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 개요

(자료: 기상청)

- (자격 명칭) 기후변화과학교육사(단일 등급)
- (주요 역할) 기후·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 및 학교 교육 지원 등
- (자격 요건) 유치원 및 학교 교육 지원에 필요한 ①학력·②경력 및 ③필수 교육 이수
 - ※ 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
 - ② 기후·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
 - ③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과정 이수
- (교육 과정) 기후·기후변화과학, 교수학습방법 등 기본·실무 10개 과목 총 144시간

<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 과정 >

과목명		배정 시간	형식	
			강의	실습
기본 (64H)	기후변화과학의 이해	21	21	
	기상·기후 현상 및 예측 이해	9	9	
	기후변화 현황·전망 및 영향	18	14	4
	기후변화 국제협력 동향	5	5	
	기상기후데이터 이해 및 활용	11	7	4
실무 (80H)	지역 기후변화 현장 연구	22		22
	기후변화과학 교수학습방법	15	3	12
	기후변화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	25	9	16
	기후변화과학 교육과 의사소통	14	4	10
	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	4	2	2
합계		144	74	70

○ (추진일정)

<2026년 사업 추진 일정>

중점추진과제	2026년		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① [제도] 효율적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 체계 마련				
1. 제도 운영 위임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 추진				
2. 제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추진				
② [인프라]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·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				
1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·관리 시스템 개발				
2. 기본·실무 교육과정(총 10과목) 표준교재 개발				
3. 필기평가 문제은행 개발				
③ [양성기관]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최초 지정				
1. 양성기관 지정 사전홍보 및 공고·신청 접수				
2. 양성기관 심사 및 지정				
④ [제도 활성화] 기후변화과학교육사 활용 수요조사 실시				
1.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한 교육 수요조사 실시				
2. 학교 이외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활용 분야 발굴				

○ (사업예산)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운영('26년 신규 예산 800백만원)

○ 표준교재 및 필기평가 문제은행 개발(200백만원)

○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·관리 시스템 구축(530백만원)

○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(20백만원)

※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 산정

○ 운영평가위원회,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(50백만원)

※ 일반수용비(35백만원), 임차료(3백만원), 국내여비(8백만원), 사업추진비(4백만원)

[참고자료 2]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관리 시스템 구성(안)

(자료: 기상청)

○ 교육사 제도 운영 · 관리를 위해 관리자와 사용자 메뉴로 구성

- (사용자) 교육대상자를 위해 ① 제도 소개, ② 양성기관 소개, ③ 교육 신청, ④ 평가 신청, ⑤ 강의실 기능 등을 중심으로 구성



< 교육사 양성 및 관리시스템 메뉴 구성도(안) / 사용자 >

- (관리자) ①자격취득자 관리, ②이론 평가 및 실무평가, ③교육 및 신청 관리, ④ 학습현황 · 평가관리, ⑤양성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



< 교육사 양성 및 관리시스템 메뉴 구성도(안) / 관리자 >